

대전지방법원 2022. 6. 24 선고 2019가단1982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현

피 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

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D, E, F

변 론 종 결 2022. 5. 27.

판 결 선 고 2022. 6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5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원고는 2019. 1. 17. 피고 B 주식회사(이하 ‘피고회사’라 한다)와 사이에 세종시 G아파트 H호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의 분양계약(이하 ‘이 사건 분양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 - 2)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가 지급할 계약금은 임대차보증금 1억 7,200만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6,340만 원은 2019. 2. 11.부터 같은 해 3. 11. 사이에 지급하되, 매도인인 피고회사는 수분양자인 원고의 잔금납부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.
 - 3) 원고는 2019. 2. 26. B에게 잔금 6,3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, 피고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, 채무자 피고회사)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.
 - 4) 이에 원고가 2022. 4. 29.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I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억 8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.
 - 5)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. 9. 22.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, 당시 위 법원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, 그 법률상관리인이 2021. 1.경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. 한편, 수원지방법원은 2021. 9.경 피고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 2021. 10.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, 피고회사가 2022. 3.경 이 사건 소송절차를 재차 수계하였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호증 내지 12호증, 을 3호증, 을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. 5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. 5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동희